경제고용진흥원 공고 제2023-18호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공고

광주광역시는 고유가·고물가 상황 및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일

(재)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이사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

나. 사업기간 : 2023. 3. ~ 12.

다.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정상운영 중이며, 신청일 기준

광주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제외업종(별첨1)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라. 지원내용 : 2023.3.1.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광주 거주, 만19세이상

만60세 미만)의 인건비 월 50만원, 최대 4개월 지원

※ 업체당 최대 2명 이내 지원

마. 지원규모: 450명 내외

바. 수행기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2 지원내용

가. 지원기간 : 2023. 3. ~ 12. (지원기간 내 최대 4개월)

나. 지원사항

- 인건비 지원 : 신규 채용자 인건비 월 50만원, 최대 4개월 지원

- 지원 인원 : 1개 업체당 2명 이내
- ※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2개 사업장만 지원

다. 지원조건

- 2023. 3. 1. 이후 신규 채용자
- 근로시간: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 최저시급 이상 인건비 지급. 신규 채용자 4대 보험 의무가입
- ※ 시업주 임금체불, 근로자 1개월 미만 근로, 최저임금 미만 지급, 4대 시회보험 미기입, 4대 사회보험료 체납 등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지원금 지원 제외

라. 참고사항

- 상시근로자는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를 통해 확인(2023,3.1.~신청일)
- 지원 대상 신규채용 근로자 수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
- *주된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일 경우 사업 참여 불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1항)
 - 〈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업종 판단기준 〉 ㅡ
-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최근년도 매출액 자료(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를 확인 후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

3 신청자격

가.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 건설, 운수, 광업 10인 미만) 광주 소재 소상공인
- *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로 확인(2023.3.1.~신청일)
-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장
- 지원제외업종(별첨1)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나. 근로자

- 채용일 기준 광주광역시 거주자(주민등록상)
- 만 19세 이상∼ 만 60세 미만 미취압자 ※연령기준일 : 공고일 현재(2023.3.1.)
- 2023. 3. 1. 이후 고용된 근로자

〈 근로자 지원제외 대상자 〉 -

- ①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 ② 동일사업장에서 중앙정부,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은 근로자
-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④ 참여신청일 현재 재학생
- 단,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대학·대학원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방송 통신·사이버·야간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가능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3. 1. ~ 12. 31.
- ※ 신청기간 내 선착순 지원이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O 신청방법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gibizinfo.or.kr)
- ※ 신청서류 미비시 접수불가하며 보완 후 재접수 요함
- O 제출서류

구 분	신청주기	제출서류
신규채용 지원신청	최 초 1회	①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 신청서 [서식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대표자, 근로자) [서식2] ③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체크리스트) [서식3] ④ 근로계약서 사본 [서식4] ⑤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⑥ 사업주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⑦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2023.3.1~신청일) / 상시근로지수 확인 ⑧ 4대 사회보험 완답증명서(신청월 발급본) ① 4대 사회보험 완답증명서(신청월 발급본) ⑩ 채용 근로자 주민등록등본(채용일 또는 이후 발급본) ※ ①~⑩은 이미지나 PDF 파일을 첨부 서류란에 첨부 제출

구분	신청주기	제출서류
인건비 지급신청	계속고용 47월 후	①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급신청서 [서식5] ② 급여대장(4개월분) ③ 급여이체증 등 급여지급 확인서류(4개월분) ④ 4대사회보험 사업장 기업자 명부(신청월 발급본) / 신규 채용자 고용유지 확인 ⑤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월 발급본) ⑥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 ①~⑥은 이미지나 PDF 파일을 첨부 서류란에 첨부 제출

- ※ 증빙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또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이름은 전체공개)
- 선정업체 및 미선정 업체 대상으로 유선 또는 문자안내
- O 지원절차



5 유의사항

- 사업주가 2023. 3. 1. ~ 신청일까지 기존 직원을 퇴사(구조조정 등) 시킨 후 신규 채용한 경우 지원 불가
 - 단,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가능, 근로자 고용정보현황조회(근로복지공단 발급)로 고용보험 상실사유 확인
- 사업주는 고용기간 근로자 인건비 매월 지급 후 고용유지 기간인 4개월 이후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검토 후 기업에 일괄지급

- 인건비 지급 신청기한 : 계속 고용 4개월 경과 후 20일 이내
- 급여 지급은 계좌로 이체한 경우만 인정(현금 지급 불인정)
- 신규 채용 후 근로자가 4개월 전 근로자의 사유로 중도퇴사 한 경우 퇴사일 (고용보험 자격상실일 전일)까지 지원금 일할 계산
- 단, 1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원금 일할 계산 지급
- 구조조정 등 회사의 인위적인 감원으로 인한 중도퇴사는 지원 불가
- 최대 지원기간 4개월 중 일할계산 지급 후 잔여기간은 지원 불가 (예시) '23.5.10자 채용 근로자는 1개월 이상('23.6.9 이휴) 근무했을 경우 지원금 일할 계산 지급 가능
- 1개월 근무 후 중도퇴사 시, 잔여 지원기간 3개월은 소멸
- 1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기존 신청 포기 후 재신청하여야 하며 재신청을 통하여 적격여부 재승인 받아야함. 재신청에 따른 지원 순위는 후순위로 변경
- O 신규 채용 근로자 대상을 중도 변경 희망하는 경우 지원 대상 근로자 퇴사 전 지원 근로자 변경 불가
- 기존 신청 포기 후 재신청은 가능하며 재신청에 따른 지원순위는 후순위로 변경

O 지도감독

- 진흥원은 필요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무자의 실근무현황 등 상시 지도 및 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허위 고용 적발 등 지원제외 항목 발견 시 즉시 지원 제외

O 화수

- 오지급·과지급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기타

- 신청서 작성내용의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6 문의처

O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소상공인지원부: 062-960-2631, 2638

광주광역시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신청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인건비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광주광역시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서는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광주광역시에 신고 바랍니다. (☎ 062-613-3722)

서식1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서

II 어 자 원 최						
사 업 장 현 황						
사 업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상시근로자	명 (※신청일 :	기준 고용보험 가	입인원)			
업 종		대 표 자				
사 업 장 주 소						
בו בו דו	이 름 :	OLD ST	사무실 🕿			
담 당 자	e-mail:	연락처	휴대폰 🕿			
	신 규 채	용 현 황 통	통 보			
채용일자		성 명				
주요업무		근로개시일	년월일			
근무시간 주 근로() 시간, 월 근로 () 시간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3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이사장 귀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대표자, 근로자) 서식 2						
	2.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체크리스트) 서식 3					
	3. 근로계약서 사본 -------------- 서식 4					
	4.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첨부서류	5. 사업주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6.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조회기간 : 2023.3.1. ~ 신청일)					
	7.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		: 이후 말급본)			
1 1	8.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신청	•	14)			
<u> </u>	9. 채용근로자 주민등록등본(채용	ㄹ 또는 이웃 달	∃ ⊏ <i>)</i>			
	최대 2명, 매월 고용유지, 급여지급	급 후 지원금 신청	!에 의해 지급함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제외됨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지원 제외
- 본 사업으로 타 업체에 중복 채용된 인원은 지원 제외, 중복지원에 따른 지원제외 및 환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 기타 공고문 및 주의사항 등 해당내용 미숙지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서식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이사장 귀하

본인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종업원 수, 사업개시일, 채용정보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연계기관 : 광주광역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정부와 지자체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 4대보험 가입여부 등) 수집·조회 및 활용
- 중앙정부,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 받은 이력 수집·조회 및 활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종업원 수, 사업개시일, 채용정보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 및 지원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원에 위의 선에 동의합니다.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3년	월		일			
						대표자	:		(서명/인)

근로자 :

(서명/인)

서식3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사업 부정수급방지 체크리스트

□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사업은 만 19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 지원 사업은 아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됨을 알려드리며, 요건 충족 시 굵은 선 안의 란에 진하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1개 문항이라도 "아니요"에 해당할 경우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	M M	거 돌가) 아니요		
1.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이 아닙니다.				
2. 신규 채용자 고용을 위해 정리해고 등 사업주에 의한 인위적 감원이 없습니다.				
3. 신규 채용자로 국가 다른 사업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4.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이 아닙니다.				
6. 4대 사회 보험료 체납 사업주(사업장)가 아닙니다.				
그 근로자 요건				
1.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2. 신청대상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3. 중앙정부,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4.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 근로자가 아닙니다.				
5. 신청대상 근로자는 참여 신청일 현재 재학생이 아닙니다. (휴학생, 졸업예정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 재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시 참여가능)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 사업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시 지원금이 전액 환수 조치됨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 (서명 또는 인)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이사장 귀하				

서식4

표 준 근 로 계 약 서

(이하 "채용기업"이라 함)과(와)(이하 "근로자"라 함)	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시분부터시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5. 임 금	
- 월 급: 원	
- 상여금 : 없음 (), 있음 ()원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있음 ()	
수 당 : 원,	
- 임금지급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임금계산기간 : 매월 일부터 일까지	
- 지급방법 : 예금통장에 입금()	
7. 근무 개시일 : 년 월 일	
8.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2023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전화:) 주 소:	
다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연락처:	
서 며 (서며)	

서식5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사 업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대 표 자		담 당 자 연 락 처			
지 원 금 신 청 액	일금 원	(1개월 기준 50만	· 난원, 최대 4개월 지원)		
지급은행명 (계좌번호)	()은행 / 계좌번호 :		/ 예금주 : ()		
	고 용	유 지 현 황			
근 로 자		연락처			
근로기간	월일 ~	_월일 /	인건비 지급신청기간		
고용유지 확 인	: - 반약 무성수급 내용() 활인됨 시 시원금 황수 등 ()[에 바른 북()[인 사항(에 내항				
위와 같이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	사업 지원금 기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급여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 	· 명부	급 여 이 체 증)		



별첨1 지원제외 업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등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64992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지원관련 <u>지원제외 업종</u> 세부 분류

분류 번호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지원 업종	분류 번호	86. 보건업 (지원제외 업종)
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10	병원
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101	종합 병원
87111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86102	일반 병원
87112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86103	치과 병원
8712	심신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104	한방 병원
87121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105	요양 병원
87122	정신질환, 정신지체 및 약물 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20	의원
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201	일반 의원
87131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202	치과 의원
87139	그 외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203	한의원
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204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8721	보육시설 운영업	863	공중 보건 의료업
87210	보육시설 운영업	8630	공중 보건 의료업
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86300	공중 보건 의료업
87291	직업재활원 운영업	869	기타 보건업
87292	종합복지관 운영업	8690	기타 보건업
87293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86901	앰뷸런스 서비스업
87294	사회복지 상담서비스 제공업		
87299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86909	그 외 기타 보건업
86902	유사 의료업(침술원, 척추지압요법치료 등)		

분류 번호	64. 금융업 (지원 제외 업종)	분류 번호	65. 보험 및 연금업 (지원 제외 업종)
641	은행 및 저축기관	651	보험업
6411	중앙은행	6511	생명 보험업
64110	중앙은행	65110	생명 보험업
6412	일반은행	6512	손해 및 보증 보험업
64121	국내은행	65121	손해 보험업
64122	외국은행	65122	보증 보험업
6413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6513	사회보장 보험업
64131	신용조합	65131	건강 보험업
64132	상호저 축은 행 및 기타 저축기관	65139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642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652	재 보험업
6420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6520	재 보험업
64201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65200	재 보험업
64209	기타 금융 투자업	653	연금 및 공제업
649	기타 금융업	6530	연금 및 공제업
6491	여신금융업	65301	개인 공제업
64911	금융리스업	65302	사업 공제업
64912	개발금융기관	65303	연금업
64913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66209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64919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6821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6499	그 외 기타 금융업	6822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64991	기금 운영업	68221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64992	지주회사	68222	부동산 투자자문업
64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68223	부동산 감정평가업

분류 번호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지원 제외 업종)	분류 번호	71. 전문 서비스업 (지원 제외 업종)
661	금융 지원 서비스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6611	금융시장 관리업	7110	법무관련 서비스업
66110	금융시장 관리업	71101	변호사업
6612	증권 및 선물 중개업	71102	변리사업
66121	증권 중개업	71103	법무사업
66122	선물 중개업	7110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6619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66191	증권 발행, 관리, 보관 및 거래 지원 서비스업	7120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66192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71201	공인회계사업
66199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71202	세무사업
662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71209	기타 회계 관련 서비스업
6620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66201	손해 시정업		
66202	보험 대리 및 중개업		

68. 부동산업 (지원제외 업종)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1	부동산 임대업	681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29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68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68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6821	부동산 관리업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68211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